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적용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심 종 석**

◀ 目 次 ▶

- I. 머리말
- II. 불이행의 정의와 이행보류
- III. 불이행의 치유와 추가기간의 지정
- IV. 면책조항과 불가항력
- V. 맺는말

(논문투고일 : 2015.08.27. / 논문심사일 : 2015.09.07. / 게재확정일 : 2015.09.18.)

I. 머리말

1926년 UN 부속기관으로서 설립된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국제사법의 조화와 조정방법에 대한 연구, 국제적 통일사법의 조약화·입법화를 위한 법제적 차원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4947).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법학박사·경영학박사.

작업수행, 그 결과로서 성안된 입법안의 점진적 채택 내지 장려 등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국제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¹⁾

그간 UNIDROIT는 이상의 지위를 통해, 국제사법 분야의 실체법을 통일하기 위한 일련의 협약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여 왔는데, 일례로 1964년 성안되어 UN에서 확정·공표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을 위시하여, 본고의 분석대상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10), ‘PICC’] 등은 그 대표적 입법결실로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ULIS와 ULF는 현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그 위상을 돋보이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전신으로 기능하였고, PICC는 법계 간 타협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CISG의 법적 공백 내지 흠결을 메울 수 있는, 이른바 ‘보충적 역할’(gap-filling role) 수행을 위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차체에 있다.²⁾

UNIDROIT는 당초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입법추진의 과정에서 ‘경성법’(hard law)이 아닌 ‘연성법’(soft law)으로의 회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식 입법절차에 의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성안하는 대신에, 국제상거래를 보편타당하게 규율할 수 있는 일반원칙의 형태로 입안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로부터 비롯된 입법결실이 곧 PICC이다.³⁾

1) 현재 UNIDROIT에 가입한 회원국은 총 63개국에 달한다. UNIDROIT의 연혁 내지 작업수행 그리고 유관법률 내역에 관한 상세는 <http://www.unidroit.org> <2015.07.30. 접속> .

2) Garro, A. M., “Gap-Filling Ro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Some Comments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Principles and the CISG”, *Tul. L. Rev.*, vol. 69(1994), p.1149; Kotrusz, J., “Gap-Filling the CISG by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vol. 14(2009), p.119; Sica, L. C., “Gap-Filling in the CISG: may the Unidroit Principles Supplement the Gaps in the Convention”,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vol. 1(2006), pp.1-28.

3) 박영복,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 그 법체계상의 지위

PICC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실제적·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일반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체계화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입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일반원칙을 계약내용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로부터 실질적인 국제적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PICC의 채용은 법가능성 기준의 국내사법의 법질서에 따른 계약의 규율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해 계약이 준거하는 법규범을 자국법도 상대국의 법도 아닌, 실제적 무역계약에 적용 또는 원용이 가능한 범세계적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을 중심으로 성안된 국제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자율성이 높은 ‘국제계약법’(international contract law)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는 특징이 있다.⁴⁾ 이에 PICC는 상인법적 시각에서 또 하나의 법통일화 작업의 결실로 취급할 수 있다.

1994년 공표 이후, 국제상사계약의 법원으로 자리매김하였던 PICC(1994)는 일련의 추가·개정작업을 통해 PICC(2004)를 거쳐 현재 PICC(2010)에 이르고 있는데, PICC(2010)은 앞선 PICC(1994, 2004)의 전면개정이라기보다 급속히 변모하는 국제상거래의 시의성에 발맞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문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⁵⁾ 이를테면 PICC는 전통적 계약법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전자적 계약체결’(electronic contracting), ‘대리인의 권한’(authority of agents), ‘제3자의 권리’(third party rights), ‘상계’(set-off), ‘채권양도’(assignment of rights), ‘채무이전’(transfer of obligation), ‘계약의 이전’(assignment of contract), ‘제소기간’(limitation period) 및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plurality of obligors and of obligees)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요컨대 PICC의 기능 내지 목적은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국제적 통일법 및 국내법의 해석 및 보충수단으로서의 역할

와 기능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2009.5), 223-254면; 우광명,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2012.9), 454-455면.

4) Baron, G., “Do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Form a New *lex mercatoria*?”,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15, no. 2(1999), pp.115-130; Berger, K. P., “*Lex Mercatoria* Doctrine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e Law & Pol’y Int’l Bus.*, vol. 28(1996), p.943.

5) 이하 ‘PICC’는 ‘PICC(2010)’을 의미한다.

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 계약법이나 특수한 거래에 관한 입법의 ‘모델 법’(model law)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⁶⁾

본고는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PICC의 역할과 위상을 중시하여 PICC상 불이행[제7편]에 관한 일반규정[제7.1.1조 내지 제7.1.7.조]을 중심으로 이에 판결례를 결부하여,⁷⁾ 당해 개별조문의 적용기준을 명료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고의 논제에 기하여 그간의 선행연구는 다수 집적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계약법상의 법리를 국제상사계약법규범과의 비교를 통하여 요약하고 당해 결과를 우리 민법예의 개정시안에 결부하고 있는 연구(김동훈, 2013), PICC와 관련하여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치유의 적용기준을 추론한 연구(서지민, 2014), 국제사법상의 채무불이행의 해석기준(이춘삼, 2007),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심종석, 2008), PICC하에서 불이행의 면책사유(이천수, 2013), 그리고 계약위반과 불이행의 본질적인 법리와 법적 기준(박상기·최준선, 2002), 면책조항의 분석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의 대비책을 제시한 연구(홍석모, 2013) 등이 있다.⁸⁾ 이상의 연구는 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해석·범위·기준 등의 사안을 독립적 또는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그 순기능적 의의를 돋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배경에 두고 전술한 연구범위 내에서 PICC 적용상 불이행에 관한 적용기준을 당해 개별조문이 적용된 판결례를 결부하여, 명료히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제상사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실무계에 명확한 법적 이해의 제고에 일련의 단초를 제공코자 한다.

6) 심종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2013, 35-36면.

7) <http://www.unilex.info> <2015.07.30. 접속>. 이 경우 ‘판결례’라고 함은 PICC 제1.11조(용어의 정의)의 시각에서, 법원의 ‘판결’과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기한 사례를 합체한 의미로 새긴다.

8) 김동훈, “채무불이행의 효과”, 『민사법학』, 제65호(2013.12), 385-417면; 서지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법학연구』, 제41집(2014.5),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531-569면; 이춘삼, “무역계약의 불이행 및 이행불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2007.4), 105-125면; 심종석,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요건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2008.8), 253-274면; 홍석모,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면책조항의 분석 및 관련분쟁 대비책”, 『법학연구』, 제52집(2013.12), 한국법학회, 383-400면.

II. 불이행의 정의와 이행보류

1. 불이행의 정의

1) 법계의 시각

일반적으로 ‘불이행’(non-performance)은, 달리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⁹⁾ 그 내용상 양자 공히 ‘법률관계를 형성한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의무에 기한 계약의 온전한 이행이 행사되지 않은 위법행위’로 설명된다.

그런데 불이행은 개별법규범의 특징 및 유형 내지 법률효과에 기하여 법리구성상 또는 국제사법 또는 법계 간의 법리적 상이로부터 일정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대륙법계에서는 불이행의 유형을 통상적으로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법률효과로서 현실적 이행강제·손해배상청구·추완청구·완전물급부청구 및 계약해제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이들을 계약위반이라는 하나의 법률사실로 포괄하여, 당해 법률효과를 각각의 계약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별하여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상 당해 계약요건에 부합하는 의무위반의 존재를 계약위반의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불이행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불이행의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는 대륙법계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¹⁰⁾

9) 이 경우 PICC는 ‘불이행’으로, CISG은 ‘계약위반’으로 각각 용어의 사용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 공히 고의·과실에 기한 귀책사유를 요건에 두고 있지 않고, 이행지체·이행불능 등을 포함하여 담보책임·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개별법규범에 따라 다소 상이한 시각을 엿보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논제에 비추어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하 양자를 합쳐하여 ‘불이행’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심중석, 전게논문, 254-255면; 김용일·김태인,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이행지체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2010.10), 386면.

10) 심중석, 전게논문, 254면.

2) PICC의 시각

PICC의 경우에는 불이행을 당해 계약하에서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이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화하여 정의하고 있다(제7.1.1조).¹¹⁾ 이 경우 불이행에는 불완전이행과 이행지체가 포함된다.¹²⁾ PICC가 표창하고 있는 불이행의 특성은 이행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자있는 이행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또한 면책 및 면책되지 않는 불이행을 공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¹³⁾ 여기서 불이행은 이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 타방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제7.1.2조) 또는 예견 불가능한 특단의 사건으로 인하여(제7.1.7조) 면책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면책에 기하여 당해 불이행을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특정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불이행당사자로서 일방은 불이행의 면책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름없이 보유한다(제7.3.1조¹⁴⁾).

11) 원문은 <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principles2010/blackletter/2010-english.pdf> <2015.07.30. 접속> .

12) Mojanoski, I., "System of Sanctions for Strengthening of Safety in International Trade for Commercial Sales of Goods", *Zbornik radova*, vol. 1(2015), p.162.

13) Bridge, M.,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vol. 19, no. 4(2014), pp.623-642.

14) PICC, 제7.3.1조(계약해제권): "(1)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의무불이행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불이행이 당해 계약하에서 피해당사자가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지 여부. 다만 이것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 (b) 불이행된 의무의 엄격한 이행이 계약의 핵심인지 여부 (c) 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것인지 여부 (d) 불이행이 피해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장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지 여부 (e)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불이행당사자가 그의 이행이나 그 준비의 결과로 형평에 반하는 손실을 겪게 되는지 여부 (3)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7.1.5조에서 허여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판결례와 평가

(1) 사실관계¹⁵⁾

미국 네바다주법에 의해 설립된 A[신청인]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A)¹⁶⁾에 따라 B[피신청인]의 계약위반 사유를 적시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¹⁷⁾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A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B는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위·투명성 결여·비협조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으로서 광산개발권의 취득을 위한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CAFTA에 따르면, ICSID는 체결국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만 권한이 있을 뿐, A가 당시 미국회사가 아닌, ‘케이만군도’(cayman islands)의 법에 의해 설립된 시점에서 발생한 본건 분쟁에는 여하한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ICSID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A는 B의 항변에 기하여, 광산개발권 승인의 주체로서 엘살바도르 정부에 의한 권리의 거부는 자신의 국적변경 이후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로 보아 이는 다름없이 ICSID 관할에 속한다고 하면서,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결요지

ICSID는 A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곧 ICSID는 비록 권한을 승인하지 않았던 엘살바도르 정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이 A가 미국회사가 되고 난 이후 제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CAFTA하에서 A로부터 제기된 B의 불이행은 이미 A의 신청에 대한 계속적인 비협조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ICSID는 PICC에 기하여 당해 불이행은 불완전한 이행 및 이행지체로 보아(제7.1.1조) 본건 판정의 정당성을 부각하였다.

15) (a)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RB/09/12』, 2012.06.01.
(b) <http://www.unilex.info/case.cfm?id=1685> <2015.07.30. 접속> .

16) ‘The Republic of El Salvador of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AFTA)’.

17)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3) 평가

본건 판결은 PICC 불이행에 관한 정의규정이 적용된 전형적인 판결례로서 취급할 수 있다. ICSID가 언급한 CAFTA 조문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행 지체의 사유로서 당해 이행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아가 하자있는 그 모든 형태를 불이행으로 취급하고 있는 PICC 규정에 비추어 ICSID 판결은 정당하였다고 본다. 다만 PICC 조문내용상, ‘타방당사자의 방해’(제7.1.2조), ‘신의와 공정거래’(제1.7조¹⁸⁾), 계약내용에 관한 ‘묵시적 의무’ 및 ‘당사자 간의 협력’(제5.1.2조 내지 제5.1.3조¹⁹⁾), ‘특정한 결과를 이행할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제5.1.4조²⁰⁾) 등이 판결주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 본다.

2. 타방당사자의 방해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한도 내에서는 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다(제7.1.2조). 본조는 불이행에 관한 두 가지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불이행, 다른 하나는 불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사건에 의하여 야기된 불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¹⁾

본조의 적용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관련 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 불이행으로 취급될 수 없음에 따라 타방당사자는 불이행에 관하여 당해 계

18) PICC, 제1.7조(신의와 공정거래): “(1) 각 당사자는 국제거래에서의 신의와 공정거래에 좇아 행위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당해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9) PICC, 제5.1.2조(묵시적 의무): “묵시적 의무는 다음으로부터 비롯된다. (a) 계약의 성격과 목적 (b) 당사자 간에 확립한 관습과 관행 (c) 신의와 공정거래 (d) 합리성”, 제5.1.3조(당사자 간의 협력):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력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때는 그와 협력해야 한다.”

20) PICC, 제5.1.4조(특정한 결과를 이행할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1) 당사자의 의무가 특정한 결과를 이룰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는 그러한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의무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는 그와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행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1) Bridge, *op. cit.*

약을 여하히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조의 취지는 일방당사자의 간섭 내지는 방해가 타방당사자의 이행에 일부 방해가 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에 그 취지가 있다.²²⁾ 이 경우 논점은 당해 방해의 유발된 정도 및 그 밖의 요인에 의한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일 것으로 본 사안은 법원에 의한 ‘사실의 문제’(the matter of facts)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이행보류

1) 법적 기준

‘이행보류’(withholding performance)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양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고, 달리 양당사자가 순차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중에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제7.1.3조).

본조는 이행의 순서(제6.1.4조²³⁾)를 정하고 있는 조문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²⁴⁾ 특히 본조는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곧 법률효과 발생차원에서 이하 판결례에서와 같이, 소위 ‘불이행의 예외’(exception for the non-performance)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²⁵⁾

본조의 적용상 특단의 유의점으로서, 타방에게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당사자는 당해 이행을 보류할 권리가 있을 수 있으나, 설령 그

22) Neumann, T., *The Duty to Cooperate in International Sales: the Scope and Role of Article 80 CISG*, Walter de Gruyter(2012), Chap. 11.

23) PICC, 제6.1.4조(이행의 순서): “(1) 당사자들이 그들의 이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기간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당사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24) Reinisch, A., “The Relevan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Uniform Law Review*, vol. 19, no. 4(2014), pp.609-622.

25) Maria, C., “The Functions of the Exception for the Non-performance of the Civil Contract”, *Ovidius University Annals, Economic Sciences Series*, vol. 14, no. 1(2014), pp.274-278.

렇다고 하더라도 앞선 판결례와 같이 통상의 경우 당해 권리가 ‘신의 및 공정거래’(제1.7조)에 반하지 않아야 함을 요건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2) 판결례와 평가

(1) 사실관계²⁶⁾

C[폴란드 채무성]가 소유하고 있는 A[폴란드]의 사유화 과정에서, B[네덜란드]는 당해 주식의 30%를 취득하고, 동시에 A의 소유주로서 C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B가 추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상당한 양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양당사자는 일련의 분쟁에 직면하였으나, 분쟁 직후 즉각적인 합의를 통해 당초 합의를 재확인하고 당해 중재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C가 B에게 합의한 바에 따라 본건 주식을 매도하지 않자, B는 자신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양국[네덜란드와 폴란드] 간 맺은 일련의 조약에 기하여 C의 불이행을 사유로 중재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본건 조약에 기하여 B의 청구는 금지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B의 청구는 종전 B와 자신 간의 분쟁합의에 의하여 이미 철회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B는 C가 특단의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불이행의 예외’에 부합될 수 있고, 나아가 계약 전 청구를 재차 제기하는 것은 여하히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본건 중재판정부는 C의 주장을 수용하였는데, 곧 불이행의 예외는 필수적인 동시이행과, 계약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자신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PICC의 규정(제7.1.3조)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본건의 경우 양당사자는 미결상태의 청구를 철회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상호 자신들의 의무만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 실제로 C의 주식에 대한 매도는 나중의 단계에서 이행되어야 할 별개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다.

26) (a) ‘Ad hoc Arbitration, Brussels’, 『Unknown』, 2005.08.19.

(b) <http://www.unilex.info/case.cfm?id=1042> <2015.07.30. 접속> .

(3) 평가

본건 판결은 PICC상 이행보류의 규정이 다름없이 적용된 사례로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이행의 예외는 계약법상의 법리로 대부분의 법제 내지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는 일반원칙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그 적용요건은 본건 판정부의 판결에서와 같이 필수불가결하여야 하고 또한 이행의 순서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Ⅲ. 불이행의 치유와 추가기간의 지정

1.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치유

1) 법적 기준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치유’(cure by non-performing party)의 내용으로서, 불이행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부당한 지체 없이 치유의 시기 및 제안된 방법을 표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치유는 그 상황에 적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당사자는 치유를 거절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익이 없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치유는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치유권은 계약해제 통지에 의해서도 일절 배제되지 않으나, 만약 치유통지가 행해진 경우라면 불이행당사자의 이행과 불일치하는 피해당사자의 권리는 치유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된다.²⁷⁾ 또한 피해당사자는 치유될 때까지 그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는 지연 손해와 치유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방지되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1.4조). 본조에 따라 불이행당사자는 특정조건 충족을 조건으로 치유에 임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에 기초한 기간을 초과하여, 그렇지만 신속하게 이행을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손해의 경감’(제7.4.8조²⁸⁾)과 ‘신의 및 공정거래’(제1.7조)에 관한 규

27) Bonell, M. J., “International Investment Contracts and General Contract Law: A Place fo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vol.17(2012), p.141.

28) PICC, 제7.4.8조(손해의 경감): “(1) 불이행당사자는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

정은 본조의 연관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은 유의하여야 한다.²⁹⁾ 여기서 치유는 ‘통지’(notice)에 의해 그 유효성이 보장되는데, 이 경우 통지는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시간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적’(reasonable³⁰⁾)이어야 한다. 또한 통지는 불이행당사자가 불이행을 인지한 이후 부당한 지체 없이 ‘상당한’(reasonable)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³¹⁾

치유가 당시 상황에 적절한 지의 여부는 그것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이행당사자가 당해 이행 시에 그 밖의 시도를 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한된다(제7.3.1조).³²⁾ 이 경우 피해당사자가 치유를 거절하는 경우 불이행당사자는 그 사유가 피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이익에 기인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거절의 사유는 조각된다.

치유는 피해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불이행을 구제하고 계약에 기하여 피해당사자가 기대하고 있는 바, 그대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이를테면 수리·대체 또는 그 밖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 경우 수리는 종전의 불이행에 관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전반적으로 물품의 가치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³³⁾ 다만 치유의 회수는 사실의 문제로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 본다.

불이행당사자가 치유통지를 합리적으로 행한 경우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적기에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유효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불이행당사자는 당해 치유에 기한 어떠한 구제수단도 원용할 수 없다.³⁴⁾ 여기서 불이행에 기한 피해당사자의 구제

함으로써 경감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 Bonell, M. J., “Model Clauses for the Us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vol.18, no.3-4(2013), pp.473-489; 서지민, 전제논문, 557면.

30) 이하, 달리 언급한 바 없는 경우에 ‘reasonable’은 ‘기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으로, 당사자의 ‘용태 또는 상태’ 등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31) Bonell, *op. cit.*(2013).

32) 오수용,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상의 매도인의 인도기일 이후 치유권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 제18권 제1호(2012.9),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 연구소, 298-299면.

33) Paziuc, C., “Contractual Liability and the System of Remedies of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Romanian Rev. Priv. L.*(2015), p.139.

수단으로는 계약해제권·대체거래·손해배상청구권·반환권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그 밖에 불이행당사자는 설령 당해 치유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치유 전에 발생하였거나, 치유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치유의 지연으로 발생하였거나, 치유로부터 방지하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당사자가 불이행당사자로부터 치유통지를 받았다면, 여하히 당해 치유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당사자에게는 ‘당사자 간의 협력’(제5.1.3조³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판결례와 평가

(1) 사실관계³⁶⁾

A[매도인, 독일]와 B[매수인, 오스트리아]는 C를 계약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사전에 물품검사를 위하여 B에게 인도된 후 매도인 국가의 D에 최종 납품될 예정이었다. 계약내용에는 D가 B의 관할 하에 C에 관한 설치의 전부를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 B와 D는 특정한 인도기일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 C의 인도지연 시 이에 대한 벌과금을 약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명시되었다. 여기서 A는 계약내용에 자신의 표준약관을 삽입하였고, B는 그간의 상거래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이 경우 표준약관은 B는 인도 후 상당한 기간 내의 물품검사의무, 부적합에 대한 통지의무, 부적합 치유의 내용 그리고 본건 물품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이행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지는 A의 국가, 적용법은 독일법 등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A는 이행을 지체하였고, B는 이에 형식적인 물품검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B는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였다. 다만 B는 D와의 계약에 의거, 인도지연을 회피하기 위하여 C의 설치에 임하였다. 그러나 C의 설치 후에도 당초 부적합이 치유되지 않

34) Reinisch, *op. cit.*

35) PICC, 제5.1.3조(당사자 간의 협력):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력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때는 그와 협력해야 한다.”

36) (a) ‘Oberster Gerichtshof, Austria’, 7 Ob 301/01t, 2002.01.14.,

(b) <http://www.unilex.info/case.cfm?id=858> <2015.07.30. 접속> .

아 B는 이러한 사실을 재차 A에게 통지하였고, A는 당해 치유를 확약하였다. 그렇지만 당해 부적합은 원천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였던 까닭에, 급기야 B는 A에게 대체품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였다. 더불어 A는 B의 통지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시하였다.

(2) 판결요지

법원은, B가 당해 부적합을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A의 주장에 관하여, B는 상당한 기간 내에 다름없이 통지하였고, 이후의 부적합 통지에 관해서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라 하여 A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이에 부수하여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은 사건의 정황, 양당사자의 지위와 특성, 물품의 성질과 수량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계약내용에 의한 구제수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설령 본건에 기하여 B가 통지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A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회피하고, 다만 당해 부적합을 보완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항변권 상실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최종판결로서 A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B가 통지한 물품의 부적합은 A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유하겠다는 상세가 B에게 전달되어야 했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A는 여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B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용인하였다.

(3) 평가

본건은 CISG가 적용된 판결례이나, 동시에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치유에 관한 PICC 조문(제7.1.4조)을 다름없이 적용할 수 있는 판결례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 내용은 불이행당사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치유의 방법과 시기를 명세하여 통지해야 하고, 제반사정으로 보아 치유가 적절해야 하며, 또한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치유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는 여전히 지연손해과 치유에 의하여 야기되었거나 방지되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당해 조문내용에 비추어 본건 법원의 판결은 여하히 훼손됨이 없다고 본다.

2.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1) 법적 기준

불이행의 경우 피해당사자는 불이행당사자에게 통지으로써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기간 동안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중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구제수단은 원용할 수 없다. 만약 피해당사자가 불이행당사자로부터 당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거나 또는 그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당사자는 그 밖의 구제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또한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지연이 행사된 때, 피해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였을 경우 피해당사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불이행당사자의 의무가 중대하지 않은 사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제7.1.5조).

본조는 불이행당사자가 이행지체에 임하고 그럼에도 피해당사자가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을 허여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통지’(notice)는 권리행사의 요건으로서 기능한다.³⁷⁾ 본조에 비추어 이행지체의 특징은 통상의 부적합에 기한 이행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는 치유될 수 없음이 통상이다. 왜냐하면 일단 이행기가 경과하면 계약상 의무에 비추어 그것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행을 수권한 당사자는 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보다도 이행지체가 보다 유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방당사자가 이행지체에 임한 경우 이행을 수권한 타방당사자는 이행지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재차 이행될 수 있다면, 이로부터의 손해는 차지하더라도 자신의 여타 구제권에 침해됨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방당사자에게 재차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한편 추가기간을 허여한 피해당사자는 이로써 당해 기간 동안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름없이 보유한다. 또한 추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선택은

37) Oglinda, B., “Principle of Progressive Gradual Use of Contractual Remedies”, *Juridical Tribunal*, vol. 4(2014), p.239.

38) Keijser, T., *et al.*, “Financial Collateral: the Legal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 and Unidroit Compared”, *Uniform Law Review*, vol. 19, no.3(2014), pp.429-458.

이행지체의 연장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중대한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추가기간 동안에 당해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이는 중대한 불이행으로 취급되어 당사자는 그 즉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판결례와 평가

(1) 사실관계³⁹⁾

계약당사자는 D[석유화합물]를 계약의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계약은 양당사자가 직접 계약체결에 임하지는 않고 C[중개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본건 계약에 관한 서면확인서는 C가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당사자에게 송부하였다. 당해 서면확인서에는 가격조건과 인도조건이 명시되었다.

A[매도인]는 유럽에 위치한 자신의 유류탱크로부터 미국에 있는 B[매수인]의 유류탱크로 D를 운반하기 위한 K[선박]를 수배하였는데, K는 이전에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선박이었다. A는 K를 선정할 때 B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K를 지정하고 B에게 K에 의한 운송을 제안하였다. A는 K의 지난 실적에 비추어 이번 경우에도 B의 승인을 예상하고 K를 지정하였다. A가 B에게 K의 선적을 통지한 후 A는 선적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B는 K에 의한 운송을 거부하였으나, A는 K외에 다른 선박을 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K에 D를 선적하였다.

이후 K는 선적지연에 따라 출항이 지체되었다. 결국 K는 계약상 인도기일을 경과하여 목적항에 도착하였다. 이에 A와 B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내용에는 A가 B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K에 선적하였기에 목적항에서 K로부터 직접 하역하는 것이 아닌, 부선을 이용할 것과, 부선의 이용비용을 A가 부담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었다.

본건 계약체결 이후 B는 이 사실을 명시한 서면확인서를 A에게 송부하였다. D는 인도기간을 경과하여 B에게 인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만약 B가 부선의 이용을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B가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D를 인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B는 D의 인도지연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A의 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9) (a) 'U.S. Court of Appeals', 『Nos.06-3390, 06-3525』, 2007.07.19.

(b) <http://www.unilex.info/case.cfm?id=1193> <2015.07.30. 접속> .

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법원은, B의 추가기간 지정과 추후의 계약변경에 관하여 K에 대한 B의 거절은 비합리적이며, 사실관계로서 계약내용에 반한 인도기일의 지체는 불이행으로 볼 수 있지만, 당해 지연이 계약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불이행으로 는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아, 본건 지연에 기하여 A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는 여하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평가

본건 사례는 외견상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유효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항소법원의 판결을 참작할 경우 실제로는 본 사건이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의 유효성에 결부된 것이 아닌, 소위 계약의 변경에 관한 타당성을 다루고 있는 사례로 취급할 수 있다. 본건에서 B는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이미 추가기간을 A에게 허여하고 있다고 보아, 이 경우 B는 당해 이행지체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A는 당초 부선에 의한 하역을 수용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지체의 면책사유로 주장한 것은 당초 B의 선적합의의 무시 내지 선적지연에 따른 과실은 차치하고서라도 여하히 용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고 본다. 본건 사례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취지의 판시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최종 판결내용으로서 A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유추할 때, 공히 당해 이유가 설시되었을 것으로 본다.

IV. 면책조항과 불가항력

1. 면책조항

1) 법적 기준

‘면책조항’(exemption clause)의 핵심은, 일방당사자의 불이행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계약조항이나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조항은 당해 계약조항의 원용이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원용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제7.1.6조).

본조는 계약당사자가 남용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저지하기 위한 일반규칙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곧 예외적으로 원용되어질 수 있는 ‘신의 및 공정거래’(제1.7조)는 차치하고서라도, 본조는 계약의 전반에 걸쳐 일방당사자에게 불공정하게 과도한 이익이 부여되는 계약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저한 불균형’(제3.2.7조⁴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조는 신의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특단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¹⁾

면책조항은 통상 불이행당사자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규정으로 기능한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이행을 불이행당사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취급된다.⁴²⁾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당해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초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이행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규정으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조는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초 합의된 이행의 성격을 불이행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성격을 내재한 조문으로 취급할 수 있다.⁴³⁾

40) PICC, 제3.2.7조(현저한 불균형): “(1) 계약이나 특정한 계약조건이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과도한 이익을 부당하게 주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하거나 당해 계약조건에 한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히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a) 당사자의 종속상태, 경제적 궁핍이나 긴박한 결핍 또는 그의 기술·무지·무경험 또는 교섭기술의 결여를 상대방이 이용한 사실 그리고 (b) 당해 계약의 성격과 목적 (2)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 법원은 합리적인 공정거래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당해 계약이나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3) 또한 법원은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계약이나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통지를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에 자신은 그러한 요청을 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알렸어야 한다. 이 경우 제3.2.10조 (2)의 규정이 적절히 준용된다.”

41) Bonell, *op. cit.*

42) Bridge, *Ibid.*

43) Bonell, M. J.,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he UNIDROIT*

한편 불이행당사자가 당해 불이행에 기초하여 피해당사자에게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를테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제7.4.13조⁴⁴⁾)에 기한 계약조건은 피해당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⁴⁵⁾ 이러한 경우 불이행당사자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본조를 원용할 자격이 없게 된다. 다른 한편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일방당사자에 의한 면책조항의 원용이 ‘현저히 불공정’(gross disparity)한 때이다. 이것은 대개 계약내용이 그 자체로 불공평하며, 당해 계약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이행에 명백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불공평하지 않는 조항이 원용되어 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불이행이 일방당사자의 심각한 경솔 및 무지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거나 또는 피해당사자가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의 제한 또는 배제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 계약내용에 비추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부수하여 일방당사자가 면책조항을 적용할 자격이 없는 경우 그 책임한도는 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피해당사자는 당해 불이행에 대하여 여하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판결례와 평가

(1) 사실관계⁴⁶⁾

A[콜롬비아]는 해상물품운송을 위해, B[미국]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3rd ed, Transnational Publications Inc.(2005), pp.159-162.

44) PICC, 제7.4.13조(손해배상액의 예정): “(1) 계약에서 불이행당사자가 그의 불이행에 인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정한 때는, 피해당사자는 그의 실제 손해와는 상관없이 당해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달리 합의되었다고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그 밖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금액이 현저하게 과도한 때는 이를 합리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45) 심종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2013.9), 210면.

46) (a) ‘Corte Suprema de Justicia, Colombia’, 『11001-3103-026-2000-04366-01』, 2011.09.08.

이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손상된 채 발견되었고, A는 C[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C는 A의 대리인으로서, B가 A에게 급부하여야 할 손해배상에 대해 B와 D[B의 콜롬비아 대리인]이 연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은 C의 주장을 수용하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B는 항소하였는데, 당해 항소법원은 부분적으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B의 손해배상을 경감하였다. 법원은, B는 운송인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액을 제한하는 선하증권에서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시하였다. C는 제기된 면책조항이 적용법인 콜롬비아법에 따르면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차 상소를 제기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C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고, B에게 제1심 법원에서 판결되었던 손해액만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판시의 근거로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PICC 면책조항을 인용하면서, 당사자는 불이행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계약조항이나 타방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조항이 현저히 불공정한 때는 원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하였다.

(3) 평가

본건은 중대하고도 현저한 면책조항은 용인될 수 없다는 PICC 면책조항이 다름없이 적용된 전형적인 판결례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판시에 반하는 항소법원의 판결취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생각건대 면책조항은 공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전반과 당해 특단의 사정에 비추어 양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균분하고자 하는 취지가 개입된, 곧 적용법[콜롬비아법] 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b) <http://www.unilex.info/case.cfm?id=1656> <2015.07.30. 접속> .

2. 불가항력

1) 법적 기준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주요 골자는, 불이행당사자가 당해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고, 계약체결시점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장애 또는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장애가 단지 한시적인 경우 면책은 그 장애가 당해 계약의 이행에 미친 효과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불이행당사자는 피해당사자에게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⁴⁷⁾ 만약 불이행당사자가 그러한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그러한 통지가 피해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행당사자는 당해 통지의 부도달에 기인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이나 이행보류권, 지급되어야 할 금원에 대한 이자청구권의 행사는 그대로 존속된다(제7.1.7조).⁴⁸⁾

본조는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피해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계약해제권이 행사된다면, 피해당사자는 불이행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불이행을 면제하는 것이 된다.⁴⁹⁾ 한편 ‘장애’(impediment)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이행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케 하는데,⁵⁰⁾ 이 경우 본조는 이행을 위하여 추가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본조는 그 적용상 장애에 관한 규정(제6.2.2조⁵¹⁾)과 함께 고려

47) Trivedi, N., “Application of Force Majeure and Hardship Principles Under CISG and Unidroit”, *International Journal of Reviews and Research in Social Sciences*, vol. 3, no. 1(2015), pp.20-23.

48) Augenblick, M., & Rousseau, A. B., “Force Majeure in Tumultuous Times: Impracticability as the New Impossibility”,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vol. 13, no. 1(2012), pp.59-75.

49) Polkinghorne, M., & Rosenberg, C., “Expecting the Unexpected: The Force Majeure Clause”, *Business Law International*, vol. 16, no. 1(2015), p.49.

50) DiMatteo, L. A., “Contractual Excuse Under the CISG: Impediment, Hardship, and the Excuse Doctrine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no. 1(2015), p.258.

51) PICC, 제6.2.2조(장애의 정의): “당사자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당사자가 수행하는 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와 불가항력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사실적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해 사실로부터 특단의 영향을 받는 자가 어떠한 구제조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조문(제6.2.2조, 제7.1.7조)의 연관성은 이에서 비롯된다. 이를테면 만약 일방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원용한다면, 그것은 불이행의 목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달리 장애를 인용한다면, 이것은 계약 내용을 재협상할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판결례와 평가

(1) 사실관계⁵²⁾

A[원고, 우크라이나·터키]는 C[금속제품]를 목적물로 D[소외 당사자, 이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물품대금의 일부분만 지급하게 되면서, A는 외화의 지급수수에 관한 우크라이나법상 이행 및 요구되는 해당 계좌에 본건을 등록할 수 없었다.

이후 B[우크라이나 조세당국]는 A의 계좌의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B는 A가 본건 매매사업을 위한 일련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이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B가 부과한 벌금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A는 외화의 지급수수에 관한 우크라이나법이 불가항력의 규정을 준치해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이로부터 면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만약 당해 등록을 위한 기간의 위반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 당해 기간은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동안 정지되고,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행의 가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사정이 발생하고 또한 다음의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장애가 성립한다. (a) 장애사유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거나 장애 당사자가 장애사유를 계약체결 후에 알게 되었을 것 (b) 장애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장애사유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을 것 (c) 장애사유가 장애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것일 것 그리고 (d) 장애 당사자가 장애사유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

52) (a) ‘Zaporizkyi Regional Administrative Court, Ukraine’, 『0870/1262/12』, 2012.04.10.

(b) <http://www.unilex.info/case.cfm?id=1728> <2015.07.30. 접속> .

(2) 판결요지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외화의 지급수수 및 등록절차와 관련한 우크라이나법상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PICC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하였는데, 곧 당사자가 자신의 불이행이 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체결 시에 그러한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 장애 또는 장애의 결과를 회피 또는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장애가 단지 일시적인 경우 면책은 그 장애가 당해 계약의 이행에 미친 효과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효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법원은 이에 추보하여, 당시 이란은 핵 활동에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지원하는 회사들의 계좌와 자산들을 동결시키는 것에 관한 ‘UN 결의안’이 적용되는 당사국으로서, 이 경우 UN 결의안은 A와 D가 당해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채택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A가 당해 결의안에 수용되어 있는 명시적 조건들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A가 불가항력에 기한 그 어떠한 유효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에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평가

본건 사례는 D의 물품대금 지급지연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공법적 사실에 비추어 A는 D와의 거래에 임하기 전에 상대방이 적절한 지위와 행위능력을 보유한 계약당사자인지를 사전에 조회하였어야 했고, 나아가 UN 결의안을 통해 D국에 소재한 일체의 당사자와 상거래가 불허된 상황에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자신의 계산에 기한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의사표시 내지 행위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A가 주장한 불가항력의 사유는 우크라이나법을 차치하고서라도, 평상의 경우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불가항력의 사유는 여하히 예견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다분했다고 하는 취지에서 본건 법원의 판결을 정당하고도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된다.

V. 맺는말

본고는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의 PICC의 역할과 위상을 중시하여 이를 대상으로 PICC 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중심으로 이에 판결례를 결부하여 당해 개별조문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논문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ICC상의 불이행은 당해 계약 하에서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이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당해 불이행에는 불완전이행과 이행지체를 포함하며, 그 특성은 이행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자있는 이행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형태 및 면책 및 면책되지 않는 불이행을 공히 포함한다. 여기서 불이행은 계약상 타방의 행위로 인하여 또는 예견불가능한 특단의 사건으로 인하여 면책될 수 있고, 일방은 타방의 면책에 기하여 당해 불이행을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특정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불이행당사자로서 일방은 불이행의 면책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계약해제권을 보유한다.

둘째, 이행보류는 계약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고, 이에 양 당사자가 순차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의점은 타방에게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일방은 당해 이행을 보류할 권리가 있을 수 있으나, 당해 권리가 신의 및 공정거래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치유에 기하여 불이행당사자는 특정조건 충족을 조건으로 치유에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의 경감과 신의 및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은 연관규정으로서 기능한다. 치유는 통지는 전달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시간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불이행당사자가 불이행을 인지하고 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유가 당시 상황에 적절한지의 여부는 그것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이행당사자가 당해 이행 시에 그 밖의 시도를 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치유가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한된다. 또한 한편 치유는 수리·대체 또는 그 밖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수리는 종전의 불이행에 관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전

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가치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 밖에 불이행당사자는 설령 당해 치유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치유 전에 발생하였거나, 치유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치유의 지연으로 발생하였거나, 치유로부터 방지하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넷째, 불이행의 경우 피해당사자는 불이행당사자에게 통지으로써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불이행당사자가 이행지체에 임하고 또한 피해당사자가 당해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을 허여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추가기간을 허여한 당사자는 이로써 당해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특단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추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선택은 이행지체의 연장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중대한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섯째, 면책조항에는 계약당사자가 남용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저지하기 위한 일반규칙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곧 당해 조항은 계약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조문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면책조항은 통상 불이행당사자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규정으로 기능한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이행을 불이행당사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취급된다. 한편 불이행당사자가 당해 불이행에 기초하여 피해당사자에게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조건은 피해당사자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불이행당사자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조항을 원용할 자격이 없게 된다. 또한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일방당사자에 의한 면책조항의 원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의 규정은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피해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계약해제권이 행사된다면, 피해당사자는 불이행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불이행을 면제하는 것이 된다. 한편 장애는 본조는 이행을 위하여 추가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불가항력은 그 적용상 장애에 관한 규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일방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원용한다면, 그것은 불이행의 목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달리 장애를 인용한다면, 이것은 계약내용을 재협상할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동훈, “채무불이행의 효과”, 민사법학(한국민사법학회), 제65호, 2013. 12.
- 김용일·김태인,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이행지체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한국통상정보학회), 제12권 제4호, 2010. 10.
- 박영복,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 그 법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제12권 제1호, 2009. 5.
- 서지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법학연구(전북대학교), 제41집, 2014. 5.
- 심종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적용』, 삼영사, 2013.
- ,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요건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한국무역학회), 제33권 제5호, 2008. 8.
- ,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한국통상정보학회), 제15권 제3호, 2013. 9.
- 오수용,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상의 매도인의 인도기일 이후 치유권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제주대학교), 제18권 제1호, 2012. 9.
- 우광명,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한국통상정보학회), 제14권 제3호, 2012. 9.
- 이춘삼, “무역계약의 불이행 및 이행불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무역학회지(한국무역학회), 제32권 제2호, 2007. 4.
- 홍석모,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면책조항의 분석 및 관련분쟁 대비책”,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52집, 2013. 12.
- Augenblick, M. & Rousseau, A. B., “*Force Majeure* in Tumultuous Times: Impracticability as the New Impossibility”, *The*

-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vol. 13, no. 1, 2012.
- Baron, G., “Do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Form a New *lex mercatoria*?”,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15, no. 2, 1999.
- Berger, K. P., “*Lex Mercatoria* Doctrine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e Law & Pol’y Int’l Bus.*, vol. 28, 1996.
- Bonell, M. J.,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3rd ed, Transnational Publications Inc., 2005.
- , “International Investment Contracts and General Contract Law: A Place fo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vol. 17, 2012.
- , “Model Clauses for the Us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vol. 18, no. 3-4, 2013.
- Bridge, M.,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vol. 19, no. 4, 2014.
- DiMatteo, L. A., “Contractual Excuse Under the CISG: Impediment, Hardship, and the Excuse Doctrine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no. 1, 2015.
- Garro, A. M., “Gap-Filling Ro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Some Comments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Principles and the CISG”, *Tul. L. Rev.*, vol. 69, 1994.
- Keijser, T., *et al.*, “Financial Collateral: the Legal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 and Unidroit Compared”, *Uniform Law Review*, vol. 19, no. 3, 2014.

- Kotrusz, J., "Gap-Filling the CISG by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vol. 14, 2009.
- Maria, C., "The Functions of the Exception for the Non-Performance of the Civil Contract", *Ovidius University Annals, Economic Sciences Series*, vol. 14, no. 1, 2014.
- Mojanoski, I., "System of Sanctions for Strengthening of Safety in International Trade for Commercial Sales of Goods", *Zbornik radova*, vol. 1, 2015.
- Neumann, T., *The Duty to Cooperate in International Sales: the Scope and Role of Article 80 CISG*, Walter de Gruyter, 2012.
- Oglinda, B., "Principle of Progressive Gradual Use of Contractual Remedies", *Juridical Tribunal*, vol. 4, 2014.
- Paziuc, C., "Contractual Liability and the System of Remedies of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Romanian Rev. Priv. L.*, 2015.
- Polkinghorne, M. & Rosenberg, C., "Expecting the Unexpected: The *Force Majeure* Clause", *Business Law International*, vol. 16, no.1, 2015.
- Reinisch, A., "The Relevan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Uniform Law Review*, vol.19, no.4, 2014.
- Sica, L. C., "Gap-filling in the CISG: may the Unidroit Principles Supplement the Gaps in the Convention",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vol. 1, 2006.
- Trivedi, N., "Application of *Force Majeure* and Hardship Principles Under CISG and Unidroit", *International Journal of Reviews and Research in Social Sciences*, vol. 3, no. 1, 2015.
- 'Ad hoc Arbitration, Brussels', 'Unknown', 2005.08.19.

‘Corte Suprema de Justicia, Colombia’, 『11001-3103-026-2000-04366-01』,
2011.09.08.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RB/09/12』, 2012.06.01.

‘Oberster Gerichtshof, Austria’, 『7 Ob 301/01t』, 2002.01.14.

‘U.S. Court of Appeals’, 『Nos.06-3390, 06-3525』, 2007.07.19.

‘Zaporizkyi Regional Administrative Court, Ukraine’, 『0870/1262/12
』, 2012.04.10.

<http://www.unidroit.org> <2015.07.30 접속>.

<http://www.unilex.info> <2015.07.30 접속>.

[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principles2010/bl
ackletter2010-english.pdf](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principles2010/bl
ackletter2010-english.pdf) <2015.07.30 접속>.

<http://www.unilex.info/case.cfm?id=858> <2015.07.30 접속>.

<http://www.unilex.info/case.cfm?id=1042> <2015.07.30 접속>.

<http://www.unilex.info/case.cfm?id=1193> <2015.07.30 접속>.

<http://www.unilex.info/case.cfm?id=1656> <2015.07.30 접속>.

<http://www.unilex.info/case.cfm?id=1685> <2015.07.30 접속>.

<http://www.unilex.info/case.cfm?id=1728> <2015.07.30 접속>.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ble Bases and Cases for the Non-Performance und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Shim, Chong-Seok

By putting emphasis on the legal functions and roles of PICC[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10)] which have been outstanding as the applicable or gener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nd including PICC into the scope of this study, this study is the paper which compared and analysed important applicable bases and characteristics coming from those legal standards. The ripple effect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right understanding of PICC in applying those rul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furthermore, to improv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n legal issues which are predictable from the application of PICC by comparatively analysing and explaining PIC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focusing on the applicable bases on non-performance under PICC, to infer legal implication and attention points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the PICC and its application, and to preserve the benefit of securing the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trade communiti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based on such inference and, furthermore, to preserve the legal and practical advantages according with such benefit. This study is based on the Sec. 1, Chap. 7 under PICC, in order to, non-performance defined(Art. 7.1.1), interference by the other party(Art. 7.1.2), withholding performance(Art. 7.1.3), cure by non-performing party(Art. 7.1.4),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Art. 7.1.5), exemption clauses(Art. 7.1.6) finally *force majeure*(Art. 7.1.7) and so on.

<Key Words>

PICC(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Non-Performance(불이행), Withholding Performance(이행보류), Exemption Clauses(면책조항), *Force Majeure* (불가항력)

